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      |
|------------|------|
| 의 안<br>번 호 | 2733 |
|------------|------|

2025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혜지 의원 외 21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지 의원)**

가. 제안사유

- 「자동차관리법」이 2024년 2월(시행 2025년 2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중 등록번호판의 봉인 업무를 제외하고 제작·발급 업무로 함(안 제2조제1호)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6. 7.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 제출의견: 원안가결<sup>1)</sup>

- 개정된 상위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대행자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장 선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견 없음

---

1)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택시정책과-20052, 2025.6.4.)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관련(안 제2조제1호)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정비·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sup>2)</sup>는 그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 자동차 봉인제 개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관련 보도자료, 2024.2.19.)

- 개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
- 목적 :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1962년)
- 발급 :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 처벌 : ①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떼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②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원) 등

- 특히 IT 기술 발달에 따라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이 낮아졌으며,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봉인제도의 낮은 실효성에 따라 '24년 2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sup>3)</sup> 되어 '25년 2월부터 시행되었음
-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봉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편리한 번호판 발급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보여짐

## ■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안 제6조제3항 등)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sup>4)</sup>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

-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 주요내용: 봉인제도 폐지

4)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3조<sup>5)</sup> 등에 따라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위해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23년 12월 심의위원회<sup>6)</sup>를 통해 권역별로 대행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24년 10월부터 신규 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참고 : 서울시 발급대행자 현황

| 사업구역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
| 강남권  | 이창기업(주)  | 김용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9         |
| 강서권  | 오토플러스(주) | 송재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3길 44 지하1층 |
| 강북권  | 한국비주얼(주) | 전점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77-1       |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대한 사항과 함께 회의 출석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sup>7)</sup>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5)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6)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택시정책과-43654, 2023.12.5.)

7)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지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73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혜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허 훈, 황철규  
의원(21명)

##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이 2024년 2월(시행 2025년 2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중 등록번호판의 봉인 업무를 제외하고 제작·발급 업무로 함(안 제2조제1호).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를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로, “지정시”를 “지정 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로, “제작·발급 및 봉인”을 “제작·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0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대행자지정”을 각각 “대행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

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과반수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조(목적) 이 <u>조례</u> 는 「자동차관<br>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br>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br>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br><u>지정시</u>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br>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br>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u>조례</u> 는 「자동차<br>관리법」 제20조 및 「자동차관<br>리법 시행규칙」 제7조-----<br>-----<br><u>지정 시</u> -----<br>-----<br>-----.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br>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br>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br>-----<br>-----.                                                                                   |
| 1. <u>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u> (이하<br>“ <u>대행자</u> ”라 한다)란 자동차관<br>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br>판의 <u>제작·발급 및 봉인</u> 업<br>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 <u>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u> (이하<br>“ <u>대행자</u> ”라 한다)”란 「자동차<br>관리법」 제20조-----<br>-- <u>제작·발급</u> -----<br>-----.          |
| 2. “ <u>대행자 지정</u> ”이란 자동차관<br>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br>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br>것을 말한다.                                                                     | 2. ----- 「자동차<br>관리법」 제20조-----<br>-----<br>-----.                                                                     |
|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u>시장</u> 은<br>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br>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br>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br>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이                                       |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u>서울특<br/>별시장</u> (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br>-----<br>-----<br>-----.                                 |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신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

제6조(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①  
---- 대행자 지정-----  
-----  
-----.

1. (현행과 같음)
2. 대행자 지정-----  
-----
3. 대행자 지정 -----  
-----
4. ----- 대행자 지정-----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  
-----  
-----  
----- 위원회-----  
-----.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생략)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7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1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

⑤ -----

-----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제>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

① -----

-----

-----

----- 「자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생략)

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대행자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행자지정의 취소 등) ---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1항-----  
-----  
-----.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이 2024년 2월(시행 2025년 2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등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담당관 |
| 담 당 관     | 주병준     |
| 추계세제팀장    | 김중헌     |
| 추 계 분 석 관 | 김지혜     |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